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4호 2016. 3. 18. (금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 1145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쌍계사)..... 4
- 하동군 고시 제2016-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 허가 고시(조충*)..... 5
- 하동군 고시 제2016-26호 지적기준점성 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16-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김경도)..... 8
- 하동군 고시 제2016-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함양국유림관리소)..... 9
- 하동군 고시 제2016-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해양코리아에너지(주))... 10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226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사용)연장 허가 공고(정춘*) 11
- 하동군 공고 제2016-250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사용)연장 허가 공고(최순*) 12
- 하동군 공고 제2016-259호 하천점용기간 연장 허가 고시..... 13
- 하동군 공고 제2016-290호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
- 하동군 공고 제2016-291호 하동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7
- 하동군 공고 제2016-294호 2016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35

회 람									
--------	--	--	--	--	--	--	--	--	--

(2) 제 454 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18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45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위원회의 구성)</u>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조정실장·도시건축과장·행정과장·산림녹지과장·건설교통과장·농축산과장·농업소득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p>	<p><삭 제></p>

하 동 군 공 보

(4) 제 454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 2016 - 24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대한불교 조계종 쌍계사	주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공사(점용 ·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61(구) (인근지번 운수리 325(대))		
	면적	30.0㎡		
	기간	2016. 3. 3. ~ 2019. 3. 1.		
	목적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 2016-25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조총목	주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400-22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1317(구), 인근지번 : 1113(답)		
	면적	426㎡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동군 고시 제 2016 - 26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설치)

순번	점명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관측(설치)일자	비고
		위도	경도	표고		X	Y		
1	3049	34 56 45.1222	127 46 53.7134	3.71	중부	261368.34	271397.38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3.9758	127 46 51.0140			161060.38	271323.07		
2	3050	34 56 46.2469	127 46 56.1292	3.14	중부	261403.48	271458.41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5.1006	127 46 53.4299			161095.52	271384.10		
3	3051	34 56 49.2783	127 46 55.9413	2.52	중부	261496.87	271452.91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8.1322	127 46 53.2418			161188.90	271378.60		
4	3052	34 56 50.8648	127 46 57.1267	1.77	중부	261545.99	271482.61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9.7188	127 46 54.4272			161238.02	271408.29		
5	3053	34 56 50.3473	127 46 59.3767	1.80	중부	261530.49	271539.82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9.2013	127 46 56.6773			161222.52	271465.51		
6	3054	34 56 48.7204	127 46 59.8643	2.98	중부	261480.45	271552.59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7.5744	127 46 57.1650			161172.49	271478.28		
7	3055	34 56 48.6839	127 47 02.1793	3.28	중부	261479.79	271611.34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7.5380	127 46 59.4800			161171.82	271537.02		
8	3056	34 56 47.0089	127 47 03.7923	3.71	중부	261428.49	271652.68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5.8629	127 47 01.0932			161120.53	271578.36		
9	3057	34 56 43.4384	127 47 05.2270	8.04	중부	261318.74	271689.94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2.2923	127 47 02.5280			161010.79	271615.63		
10	3058	34 56 43.1000	127 47 09.7285	11.87	중부	261309.21	271804.26	2016.01.21. (설치)	세계 지역
		34 56 31.9540	127 47 07.0297			161001.26	271729.93		

하 동 군 공 보

(7) 제 454 호

순번	점명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관측(설치)일자	비고
		위도	경도	표고		X	Y		
11	3059	34 56 41.0614	127 47 11.1026	13.58	중부	261246.66	271839.62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9.9154	127 47 08.4039			160938.72	271765.29		지역
12	3060	34 56 37.9659	127 47 09.8687	8.21	중부	261151.02	271809.06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6.8197	127 47 07.1702			160843.08	271734.74		지역
13	3061	34 56 30.7980	127 47 06.6279	3.68	중부	260929.48	271728.55	2016.01.21. (설치)	세계
		34 6 19.6513	127 47 03.9296			160621.54	271654.25		지역
14	3062	34 56 32.4279	127 47 05.2546	4.14	중부	260979.43	271693.31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1.2812	127 47 02.5562			160671.50	271619.00		지역
15	3063	34 56 35.8109	127 46 58.5990	4.14	중부	261082.36	271523.60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4.6642	127 46 55.9002			160774.42	271449.30		지역
16	3064	34 56 37.8645	127 46 53.6197	3.88	중부	261144.66	271396.75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6.7177	127 46 50.9207			160836.71	271322.45		지역
17	3065	34 56 40.1067	127 46 54.1898	2.14	중부	261213.87	271410.67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8.9600	127 46 51.4908			160905.92	271336.38		지역
18	3066	34 56 43.0708	127 46 54.9099	1.20	중부	261305.36	271428.23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31.9243	127 46 52.2108			160997.40	271353.93		지역
19	3067	34 56 43.0784	127 47 00.4062	3.66	중부	261306.69	271567.70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31.9321	127 46 57.7072			160998.73	271493.39		지역
20	3068	34 56 41.6471	127 47 03.6838	5.00	중부	261263.23	271651.22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30.5009	127 47 00.9849			160955.28	271576.90		지역
21	3069	34 56 39.5433	127 47 07.1615	7.17	중부	261199.09	271739.98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8.3971	127 47 04.4628			160891.15	271665.66		지역
22	3070	34 56 37.9191	127 47 05.9425	3.88	중부	261148.79	271709.44	2016.01.21. (설치)	세계
		34 56 26.7727	127 47 03.2439			160840.85	271635.12		지역

하 동 군 공 보

(8) 제 454 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 2016 - 30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김 경 도	주소	경남 창원시 성순구 삼귀로 185-21(귀곡동)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949(구) (인근지번 악양면 입석리 480-3(대))		
	면적	28.0㎡		
	기간	2016. 3. 9. ~ 2018. 2.20.		
	목적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 2016 - 31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122-1(구) (인근지번 대송리 산21-2(임))		
	면적	6.0㎡		
	기간	영구		
	목적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2016-3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해양코리아에너지(주)		
	대표자 (성 명)	하향연	주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257-4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573번지(구)		
	면적	49.0㎡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공장건립(자화육각수기) 및 진입로개설공사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6-22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정 춘 애	주소	하동군 화개면 목암길8
소하천명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76번지, 인근번지 : 운수리 685-2		
	면적	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4.13 ~ 2021.4.12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하 동 군 공 보

(12) 제 454 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6-250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최순택	주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75
소하천명		학동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9번지, 인근번지 : 목계리 1707		
	면적	35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4.13 ~ 2021.4.12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제 2016 -259 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면 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김용대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015-5	중이천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482	405㎡	기타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이정식	경남 하동군 황천면 학리 104	황천강	하동군 황천면 학리 1152-3	367㎡	경작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노미아	경남 하동군 화개면 가탄길 12	화개천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1	15㎡	기타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차기정	경남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13-6	화개천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1	14㎡	기타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강재현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길 65	섬진강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31-2	926㎡	경작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황효상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748	호계천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941-27	4800㎡	경작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최원철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62	호계천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941-65	2148㎡	경작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정연국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장로 154번길 49	북방천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024-38	864㎡	경작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안정환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수길 38	북방천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915-11	80㎡	기타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김순태	경남 하동군 황천면 돌고지로 64	여의천	하동군 황천면 애치리 구 1188-17	56㎡	기타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오영현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515, 103-1203	황천강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905	408㎡	기타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평당마을회	경남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65-22	고룡천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860-1	200㎡	기타 목적으로 하는 점용	2016.4.13.~2021.4.12

2016년 3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가. 송림공원은 하동군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하동의 아름다운 풍광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역사적, 경관적,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임
 - 나. 또한 천연기념물 제445호(2005.02.18)로 지정된 송림은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나. 송림공원 이용제한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 다. 송림공원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라. 원상회복,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4조)
 - 마. 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5조)

- 바. 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조)
 - 사. 공원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8조, 제19조)
 - 아. 공원이용시 금지행위 및 단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73, FAX 880-2469, e-mail : avantte6543@korea.kr)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별지서식 포함)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송림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림공원의 생태보전 및 공원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림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림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3 일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송림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송림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공원사용신청을 하여 공원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료”란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송림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송림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송림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 및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송림의 생태계 유지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책무) 송림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원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에 따라 지정된 송림공원으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송림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송림공원의 보전 및 이용

제8조(이용제한) ① 송림공원은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송림공원 내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연속구역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림공원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연휴식년제) ① 군수는 송림 보전을 위해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송림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림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송림의 자연휴식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송림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송림공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원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동일한 일시에 송림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어린이, 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③ 군수는 공원사용 신청자의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외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사항 변경) 군수는 공원 사용을 허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하동군이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공원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공원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송림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외 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취소 등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이용료) ① 군수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서 섬진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2.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3.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단체 및 참여자

4. 군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이나 시범적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그 외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범위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송림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진강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
 2. 수질, 환경, 생태, 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섬진강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계승 발전
 4. 각종 문화행사나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
 5. 섬진강 및 송림공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6. 그 밖에 송림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
- 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섬진강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법정 공익단체(법인)
2. 섬진강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3. 섬진강 및 송림 형성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의단체·모임

- ③ 제2항에 의한 단체가 송림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단체의 참여방법, 운영경비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송림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섬진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송림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군수는 제20조의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자는 단속 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21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이 기재된 송림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그 외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54 호

[별표 1]

공원시설(제15조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나.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휴양시설	가. 캠핑장, 분수대, 강변물놀이장, 선텐장, 전망쉼터, 낚시터 (단, 섬진강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3.편익시설	가.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 야외무대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4.유희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대여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5.공원편의시설	가. 주차장, 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조명시설, 음수대, 그늘막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6.조경시설	가. 잔디밭, 꽃단지, 초지, 호안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7.기타시설	그 밖에 군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림 공원에 설치된 시설

[별지 제1호 서식]

<h2 style="margin: 0;">송림공원 사용허가신청서</h2>				
행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신청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m ²	
행 사 내 용				
<p>「하동군 송림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하동군수 귀하</p>				
<p>☞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p>				

하 동 군 공 보

(26) 제 454 호

[별지 제2호 서식]

송림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조례 제 00조 00항 00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
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135mm×19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6-291호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캠핑장의 수요 및 이용객은 증가하는 반면, 이용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캠핑장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상된 캠핑 환경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및 세분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존 20,000원으로 동일 적용되었던 사이트의 사용료를 3개(카라반야영사이트, 자동차야영사이트, 텐트야영사이트)로 세분화하여 요금 징수 (안 별표1)
 - 비수기 사용료 할인에 대한 내용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수정(안 별표1)

하 동 군 공 보

(28) 제 454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055-880-2386, FAX 055-880-236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앞날)		
모빌홈	6인실	70,000	100,000	130,000	1일 기준
카라반	4인실	50,000	80,000	100,000	
카라반야영 사이트	1개소/1대당	30,000	30,000	30,000	
자동차야영 사이트	1개소/1대당	24,000	24,000	24,000	
텐트야영 사이트	1개소	20,000	20,000	20,000	

-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단, 기준정원 초과 시 추가요금 및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은 할인되지 않음.
-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현 행> <u>캠핑장 시설사용료</u></p> <p style="text-align: center;"><별첨></p>	<p>[별표1] <개정안> <u>캠핑장 시설사용료</u></p> <p style="text-align: center;"><별첨></p>

[별표 1]

<현 행>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모빌홈	6인실	70,000	100,000	130,000	1일기준
카라반	4인실	50,000	80,000	100,000	
<u>오토캠핑장</u> (전기·샤워시설포함)	<u>1개소/1대당</u>	<u>20,000</u>	<u>20,000</u>	<u>20,000</u>	

-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을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정원에 따름.
-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 추가징수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하 동 군 공 보

(34) 제 454 호

[별표 1]

<개정안>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앞날)		
모빌홈	6인실	70,000	100,000	130,000	1일 기준
카라반	4인실	50,000	80,000	100,000	
<u>카라반야영 사이트</u>	<u>1개소/1대당</u>	<u>30,000</u>	<u>30,000</u>	<u>30,000</u>	
<u>자동차야영 사이트</u>	<u>1개소/1대당</u>	<u>24,000</u>	<u>24,000</u>	<u>24,000</u>	
<u>텐트야영 사이트</u>	<u>1개소</u>	<u>20,000</u>	<u>20,000</u>	<u>20,000</u>	

-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단, 기준정원 초과 시 추가요금 및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은 할인되지 않음.
-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중학생 이상) 5,000원 추가징수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하동군 공고 제2016-291호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하동군청 민원과,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하동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하동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6. 3. 14

하 동 군 수